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4. 22.
행정소방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4월 8일
충청북도지사
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4월 9일

3. 상 정 및 의 결 일 자

제279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(2009. 4. 20)
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신동인)

1. 제안이유

- 도가 출연한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S/W지원센터가 도의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의회(제226회 임시회) 동의를 받아 무상대부한 청주의료원 구병동(도유재산)의 대부기간(2004.4.30~2009.4.29)이 만료되었으나
-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S/W지원센터의 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오창 U-플랫폼운영센터의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공사의 준공 및 충북S/W지원센터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번지(청주의료원 구병동)
- 규 모 : 연면적 4,368㎡중 2~3층 2,166㎡
- 용 도 :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
창업보육 및 경영지도
- 대부기간 : 2009.4.30~2010.8.21(1년 4개월)
- 신 청 인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(충청북도 출연법인)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)

- 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주의료원 구병동 건물 중 2,166㎡를 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이 S/W지원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9.4.30부터 2010.8.21까지 무상대부 하는 내용임.
- 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는 당해 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는 수익계약으로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2004.4.30부터 2009.4.29까지 무상대부 중에 있으며
-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기간을 2009.4.30부터 2010.8.21까지 갱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다른의견은 없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V. 토론 요지 : “생 략 ”

VI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

의안 번호	3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4월 8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가 출연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충북S/W지원센터가 도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의회(제226회 임시회) 동의를 받아 무상대부한 청주의료원 구병동(도유재산)의 대 부기간(2004.4.30~2009.4.29)이 도래되어
-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충북S/W지원센터의 이전을 위해 추진하는 오창 U-플랫폼운영센터의 증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공사의 준공 및 충북S/W지원센터 이전할 때까지 무상으로 대부하고자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3호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- 위 치 :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554-6(청주의료원 구병동)
- 규 모 : 연면적 4,368㎡중 2~3층 2,166㎡
- 용 도 : 도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 보육 및 경영지도
- 대부기간 : 2009.4.30~2010.8.21(1년 4개월)
- 신 청 인 :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(도 출연법인)

3. 관계법령 : 별 첨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18호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3호

관계법령발취

[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, 같은 법 시행령]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	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<p>제29조 (계약의 방법)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, 증권의 경우에는 「<u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u>」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, 이 <u>법 제4조제1항제2호</u>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<u>제76조제2항</u>을 준용한다.</p> <p>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 정한다</u>.</p> <p>제34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<u>제32조</u>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잡종재산을 직접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<u>대통령령이 정하는</u>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	<p>제29조 (잡종재산의 대부계약 등) ①<u>법 제29조</u> 단서에 따라 잡종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한다.<개정 2006.10.27, 2006.12.30,2008.4.18, 2008.10.29, 2008.12.31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17. 생략 18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때 <p>제35조 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 ①<u>법 제34조제1항제2호</u>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개정 2006.12.30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2. 생략 3.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